

군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659호 2023. 03. 10.(금)

조 례

제2893호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3
제2894호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6
제2895호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9
제2896호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2897호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13
제2898호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2899호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27
제2900호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
제2901호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규 칙

제1343호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35

고 시

제2023-10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41
제2023-1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45

공 고

제2023-423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49
제2023-425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51
제2023-43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 54
제2023-440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58
제2023-44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60
제2023-44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62
제2023-44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64
제2023-449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66
제2023-452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68
제2023-454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70
제2023-45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72
제2023-459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74

제2023-460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76
제2023-46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78
제2023-473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80
제2023-475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82
제2023-478호 무단방치 건설기계 소유자 미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85
제2023-484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87
제2023-48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89
제2023-48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91
제2023-489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93
제2023-491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95
제2023-497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변경공고 ····· 97
제2023-506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변경 지정·공고 ····· 125
제2023-509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도로의 폐지 공고 ····· 127

회람									

발행 : **홍천군 기획감사실**
(전화 : 033-432-7801, FAX:033-430-2019)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3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홍천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홍천군의회 사무과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30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9조(분석·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집주소		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생년월일 및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사고내용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사고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천군수 귀하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4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홍천군 취약계층의 자립생활능력 향상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지원, 자활사업 운영과 지원,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등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4.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활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등 지원) ① 군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자

활사업실시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2.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와 임대료
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7. 자활사업을 위한 유・무형의 기능・설비・장비 보강과 구입
8. 지역특화자활사업의 발굴을 위한 사회복지 선진지 연수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용역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업

제7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홍천군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운영과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천군 자활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6. 홍천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과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5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지원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3. 물가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위촉한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해당 업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6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만원 이내의"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근 1년 이내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20만원 이내 교통비 등 지원
2. 최근 1년 이내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내 교통비 등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이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① ---------- ---------- ---------- ---------- 예산의 범위에서 ---------- ----------.
<신 설>	1. 최근 1년 이내 운전사실이 증명된 경우, 20만원 이내 교통비 등 지원
<신 설>	2. 최근 1년 이내 운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내 교통비 등 지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7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환경을 보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쓰레기"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등이「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의 재활용(이 조례에서 "재활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군의 체계적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과 사업자, 군 소재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과 지원)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추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종류와 해당 종류별 범위 지정
2. 분리수거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의 확보와 보관용기의 설치
3. 해당 재활용단지와 시설의 설치·운영
4.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②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수행사업을 군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군의 예산절약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군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촉진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과 지도·감독, 제7조의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8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수립·시행하여야"를 "수립·시행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외부도색

제7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확인하여야"를 "조사·확인해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완료하여야"를 "완료해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착수하여야"를 "착수해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한다.

제13조 중 "수행하여야"를 "수행해야"로, "사용하여서"를 "사용해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반납하여야"를 "반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산·검사하여야"를 "정산·검사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 후단 중 "정리하여야"를 "정리해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시하여야"를 "개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명시하여"를 "명시해"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응하여야"를 "응해야"로 한

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출입하여"를 "출입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조하여야"를 "협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 중 "누설하여서"를 "누설해서"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3. 10.>

총사업비·세대규모별 지원기준(제6조 관련)

세대규모별 지원기준 / 총사업비	지원 금액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1,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전액	총사업비의 0.8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8)	8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2,1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5,000만원 초과	3,5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3,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5)

비고

가) 지원상한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안등 전기료는 전액 지원한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재난·재해 방지를 위하여 공용시설물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시 지원상한액내에서 사업비 전액지원 가능.

[별표 2] <개정 2023. 3. 10.>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제6조제5항 관련)

<table>
<tr><td>공통기준</td><td colspan="2">1. 조례 제6조에서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우선 지원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물품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
나. 삭제 <2023.3.10.>
다.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담보책임기간(별표4)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담보책임기간 미 경과)
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시설물
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예상되어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바. 지원대상사업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사.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업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요하는 시설물의 정비·지원은 관계법규에 의한 행위허가 등을 득하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결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td></tr>
<tr><td rowspan="5">시설물별 지원기준</td><td>1. 어린이 놀이터</td><td>가. 어린이놀이터는 제반시설물의 보수비를 지원하되, 보수불가시 동종 또는 대체놀이기구로의 교체비 지원</td></tr>
<tr><td>2. 단지내 도로 및 보안등</td><td>가. 단지 내 도로는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 차도와 보도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말하며, 지원대상 도로의 구분 및 판단은 지원 주관 부서에서 판단한다.
나. 도로의 포장은 부분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전면 포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 상태와 유사한 재질(재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안등은 단지내 도로상에 설치된 보안등의 보수를 원칙으로 한다.</td></tr>
<tr><td>3. 하수도</td><td>가. 하수도의 준설은 단지 내 도로에 설치된 하수도에 한한다.
나. 하수도시설은 부분보수비를 지원한다.</td></tr>
<tr><td>4. 재난위험시설물</td><td>가. 석축·옹벽·절개지 등 재난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나.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전면교체 제외)</td></tr>
<tr><td>5. 보안등의 전기요금</td><td>가.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공동주택 : 해당연도 전기요금의 월별 금액의 합계(매월 고지서 기준 월별 청구 지급)
나. 보안등 전용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 매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약관에 정한 가로등(갑)의 금액을 참조
군수가 정하는 보안등 단가금액(월)×12월× 보안등 등수×1.137
(부가세 및 전력 산업기반기금)</td></tr>
</table>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종합계획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 ---------- ---------- 수립・시행해야 -----.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등) ①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외부도색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등) ① ---------- ---------- 별지 제1호서식---------- 제출해야 ------.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 ---------- ---------- 첨부해야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할 때에는 신청자를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 ---------- ------- 확인해야 ---------- ----------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④ ---------- -- 조사·확인해야 ----.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지원심의위원회 회의) ① (생 략)	제9조(지원심의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통지해야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생 략)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보조금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통보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별지 제2호서식---------- ---------- 제출해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조금지원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의 경우 실적비로 공사완료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⑤ ---------- ---------- 완료해야 ---------- ---------- ---------- ----------.
제12조(사업착수)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	제12조(사업착수) ① ---------- ---------- 착수해

여야 하며, 착수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야 ---------- 별지 제3호서식 ---------- 제출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수행해야 ---------- 사용해서----------.
제15조(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등) ① ---------- 별지 제4호서식---------- 제출해야 ---------- 반납해야 ------.
② 지원대상 사업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집행의 적정성을 정산·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 정산·검사해야 ---------- 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계정과목 구분)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명백히 구분 되도록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정과목 구분) ----------. ---------- 정리해야 ----.
제2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구성) ①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 별지 제5호서식---------- 제출해야 -----.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 개시해야 ----.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6호서식---------- 제시해야 -------. ----------. ---------- 명시해 ---------- 통지해야 ----.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 별지 제7호 서식---------- 통보해야 -----. ----------.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 조정서 원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 별지 제8호서식---------- 송달해야 ----. ----------.
⑥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 이행해야 -----.
제23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① ---------- 별지 제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② ----------

사정이 없으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 제출해야 ----.
③ 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와 관리주체는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 ---------- ---------- 응해야 ----.
제24조(사실 조사·의견청취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실 조사·의견청취 등) ① ---------- ---------- ---------- 출입해 -- ---------- ---------- ----------. ---------- ---------- 협조해야 ------.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분쟁의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 별지 제11호서식---------- ------ 통지해야 -----.
③ 당사자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 ----- 별지 제12호서식---------- ----------.
제2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생 략)	제25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반려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별지 제13호서식---------- ---------- 통보해야 ------.
제26조(조정의 종결) ① (생 략)	제26조(조정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별지 제13호서식---------- 통지해야 ----.
제27조(선정대표자) ① ~ ③ (생 략)	제27조(선정대표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④ ---------- ---------- 해야 ------.
⑤ 분쟁조정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⑤ ----------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선임(해임·변경)계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제출해야-----.
제29조(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비밀의 준수) ---------- 누설해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총사업비·세대규모별 지원기준

세대규모별 지원기준 / 총사업비	지원 금액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1,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전액	총사업비의 0.8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8	8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2,1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5,000만원 초과	3,5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3,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5

개 정 안

[별표 1] 총사업비·세대규모별 지원기준

세대규모별 지원기준 / 총사업비	지원 금액	
	150세대 미만	150세대 이상
1,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전액	총사업비의 0.8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8)	80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4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7)	2,1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5,000만원 초과	3,5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6)	3,000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비의 0.5)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2]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table>
<tr><td>공통기준</td><td>1. 조례 제6조에서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우선 지원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아파트 전면도색
다.～사.(생략)
3. (생략)</td></tr>
<tr><td rowspan="3">시설물별 지원기준</td><td>1.～3.(생략)</td></tr>
<tr><td>4. 재난위험시설물</td><td>가. 석축·옹벽·절개지 등 재난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신 설></td></tr>
<tr><td>5.(생략)</td></tr>
</table>

</td><td>

[별표 2] 지원대상 시설물별 세부지원기준

<table>
<tr><td>공통기준</td><td>1. 조례 제6조에서의 지원대상은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우선 지원하되,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변 환경 등 정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td></tr>
<tr><td rowspan="3">시설물별 지원기준</td><td>1.～3.(현행과 같음)</td></tr>
<tr><td>4. 재난위험시설물</td><td>가. 석축·옹벽·절개지 등 재난방지를 위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나.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지원(전면교체 제외)</td></tr>
<tr><td>5.(현행과 같음)</td></tr>
</table>

</td></tr>
</table>

조례

홍천군 조례 제2899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홍천군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과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영양관리"란 어린이의 성장시기와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급식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순회방문지도"란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홍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급식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
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
4.「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과 돌봄센터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시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과 운영
2.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운영
3. 어린이급식용 식단 개발과 보급
4.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등에 관한 순회방문지도와 컨설팅
5. 위생과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과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21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계약만료 90일 전에 업무 추진실적,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센터 운영평가)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조례 제2900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제42조"를 "제51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관,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법 제117조"를 "법 제131조"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실·단·과장급과 동일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조례 1980호〉	제1조(목적) ---------- 제51조----------.
제2조(범위) 홍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2.---------- 실・단・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정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3.---------- 제126조부터 제129조----------
<신 설>	4. 제2호 및 제3호의 실・단・과장급과 동일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에서 당해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4.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06.12.29 조례 제1953호, 2007.7.31 조례 1980호〉〉	5. 법 제131조----------

조례

홍천군 조례 제2901호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홍천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3. 비상근무 등으로 계속적인 초과근무에 따른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5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일수란 및 같은 란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일수란의 "2"를 각각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23. 3. 1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5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

③ 의장은 소관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주최(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td><td>제15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 5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1. 홍천군의회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3. 비상근무 등으로 계속적인 초과근무에 따른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td></tr>
<tr><td>[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 rowspan="2">결 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 산</td><td>배우자</td><td>10</td></tr><tr><td rowspan="4">사 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2</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2</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td><td>1</td></tr><tr><td>입 양</td><td>본인</td><td>20</td></tr></table></td><td>[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table><tr><th>구 분</th><th>대 상</th><th>일 수</th></tr><tr><td rowspan="2">결 혼</td><td>본인</td><td>5</td></tr><tr><td>자녀</td><td>1</td></tr><tr><td>출 산</td><td>배우자</td><td>10</td></tr><tr><td rowspan="4">사 망</td><td>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td><td>5</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td><td>3</td></tr><tr><td>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td><td>3</td></tr><tr><td>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td><td>1</td></tr><tr><td>입 양</td><td>본인</td><td>20</td></tr></table></td></tr>
</table>

규칙

홍천군 규칙 제1343호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신 영 재

2023년 03월 10일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으로,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규칙 제22조제3항"을 "훈령 제12조제1항"으로, "별표 3, 별표 4"를 "별표 4, 별표 5"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를 "(출납사무의 인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규칙 제97조"를 "훈령 제7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중 "규칙 제135조제1항"을 "훈령 제105조제1항"으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①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홍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홍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홍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홍천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홍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3. . .>

홍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	본 청	의회사무과	제1관서	기타관서 (임시관서)	읍·면
회 계 책 임 관	행정복지국장	-	-	-	-
징 수 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단·과장	-	세입업무 담당과장, 각 관서 세입업무 주무팀장	-	-
재 무 관	행정복지국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세무회계과장, 실·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 담당과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각 관서 회계·지출업무팀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제외)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행정복지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단·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관서의 장	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단·과장	사무과장	관서의 장	-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세무회계과장	-	-	-	-
지 출 원	경리팀장	의정팀장	각 관서 회계·지출업무팀장	-	총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재정·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	의정팀장	각 관서 세입업무팀장	세입업무팀장	총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단·과 회계·지출업무팀장	-	각 과 회계·지출업무팀장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각 관서 회계·지출업무팀장	회계·지출업무팀장	총무팀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회계·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각 관서 지출업무담당자 각 관서 서무업무담당자	회계·지출업무팀장, 서무업무담당자	회계·지출업무담당자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홍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 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기타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 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	<삭 제>

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십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 실·과장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실·단·과장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 별표 4, 별표 5----------.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

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①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23-10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체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홍 천 군 수

1. 홍천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해제 고시 면적 (㎡)	지정현황	산림보호구역 종류	소유자	
면	리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주소	성명
계			8,265	8,265	8,265				
영귀미	성수	산35-1	8,265	8,265	8,265	2000. 12. 11 (산림청고시) 2000-37 2018. 12. 28 (재고시) 2018-10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1길 **	한**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4.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내(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5.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산림과(☎ 033-430-2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끝.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해제 예정면적 (단위:m2)	소유자		보호 유형	세부 유형	소유 구분	사유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강원	홍천	영귀미	성수	산35 -1	임	8,265	8,265	8,265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1길 **	수원 함양 보호 구역	제3종	사유림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0.23>

산림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면적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공고일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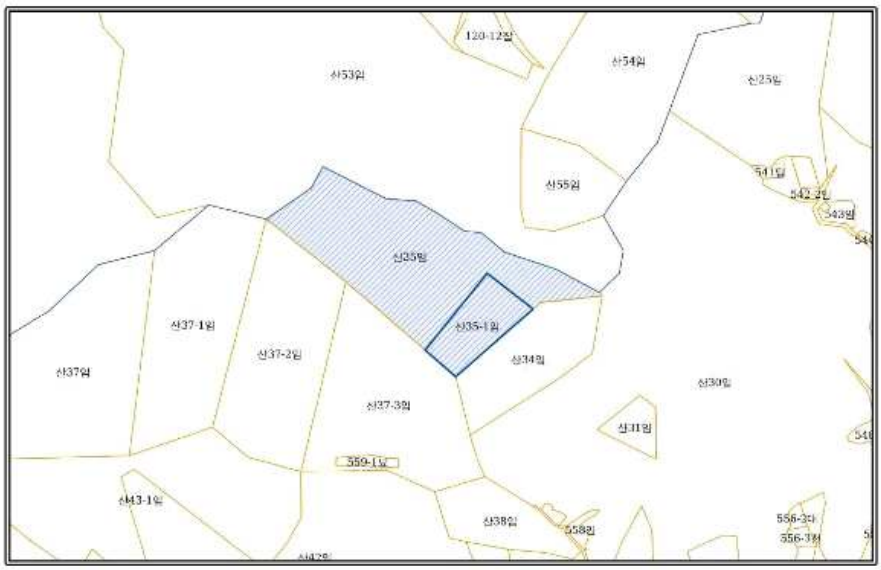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산림보호구역 지정도면(1:4,000)



홍천군 영귀미면 성수리 산35-1번지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23-11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체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홍 천 군 수

1. 홍천군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임야 소재지					해제 고시 면적 (㎡)	지정현황	산림보호구역 종류	소유자	
읍면	리	지번	면적	지정 면적				주소	성명
계			47,533	47,533	10,000				
서	어유포리	산79	47,533	47,533	10,000	2005. 12. 20 (재지정고시) 2005-68	경관보호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박 *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도면첨부

4. 이의 신청기간 : 고시일로부터 10일내(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5.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산림과(☎ 033-430-27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1부.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1부.
3.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도면 1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단위:m2)	지정면적 (단위:m2)	해제 예정면적 (단위:m2)	소유자		보호 유형	세부 유형	소유 구분	사유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성명	주소				
강원	홍천	서	어유포	산79	임	47,553	47,553	10,000	박 ㅇ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경관 보호		사유림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6.>

산림보호구역 [ ]지정 [ ]해제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산림 면적	㎡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 . .(제 호)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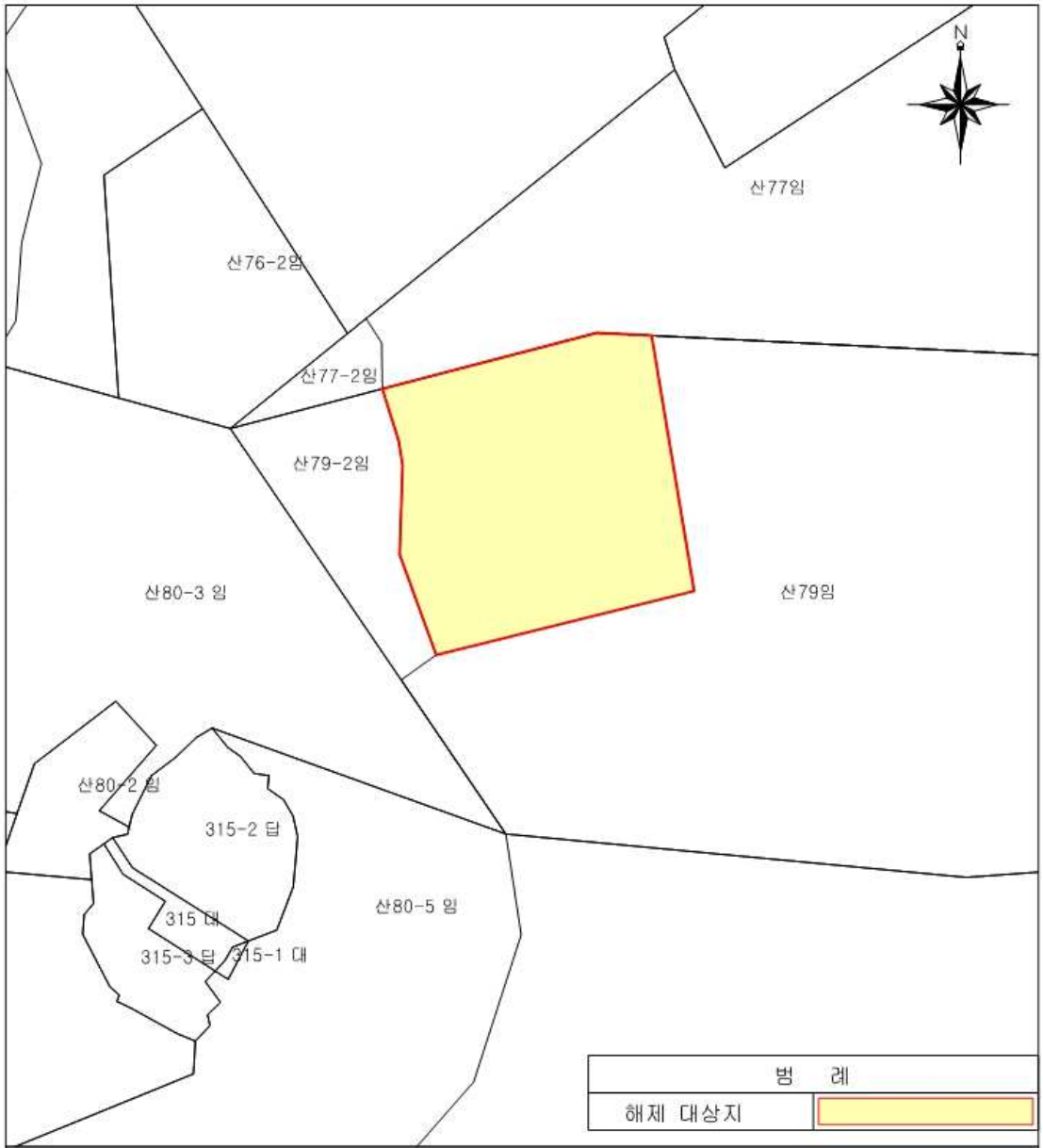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산림보호구역 해제 구적도

소재지 :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산79번지 Scale:1/2,000



구 적 도

지 번	지목	지정면적(㎡)	해제 면적 (㎡)
서면 어유포리 산79번지	임	47,533	10,0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23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63번지외 1필지(66-3번지)
3. 도로길이: 312m
4. 도로너비: 4.0~6.0m
5. 도로면적: 1,62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내촌면 물걸리	63	전	18,400	1,542	박○희	도로 지정
	66-3	대	152	85	박○희	
계			18,552	1,627		

위 치 도	축척 : NONE



현 황 도	축척 : NONE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63, 66-3

30304-26822 대
98.12.28 승인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25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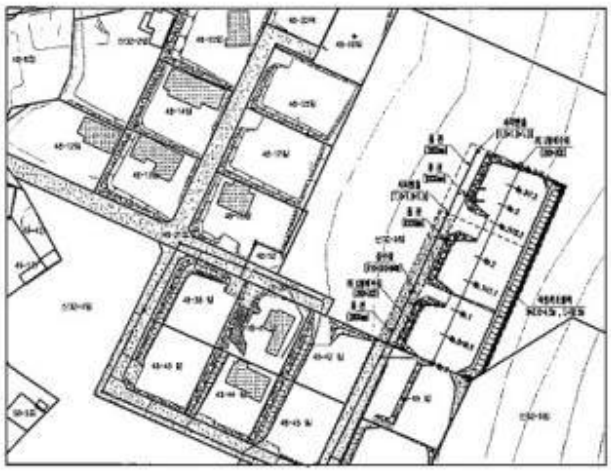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당초)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산32-9
   (변경)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48-57, 48-63번지
3. 도로길이: (당초) 49.5m
   (변경) 68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당초) 313㎡
   (변경) 48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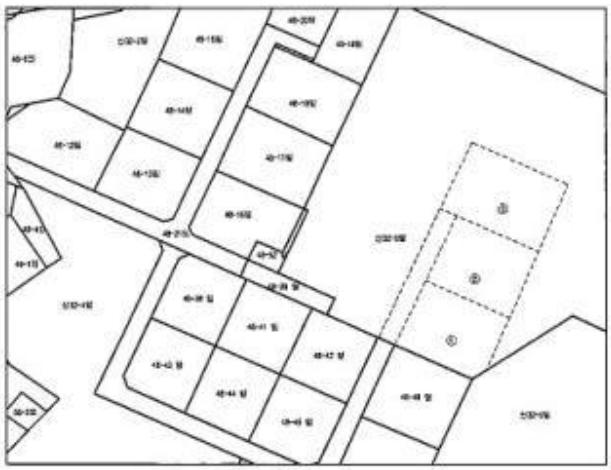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도로 지정
북방면 중화계리	산32-9	임	20,898	313	변○훈 변○훈	
변경						
북방면 중화계리	**48-57**	**임**	**313**	**313**	**변○훈** **변○훈**	
	48-63	**임**	**174**	**174**	**변○훈** **변○훈**	
계			**487**	**487**		

[당초]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도 축척 <임의>



구 적 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지번	지목	사업면적	편입면적			용도구분	비 고
			기호	부지	임 야	계	
산32-1	임	25,896	①	770	-	770	지연녹지
			②	780	-	780	지연녹지
			③	840	251	1,250	지연녹지
합 계		25,896		2,390	251	2,640	지연녹지

위치도 축척 [V] 1/1,200 , [ ] 1/2,400

[변경]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도 | 축척 <임의>



위치도 | 축척 [V] 1/1,200 , [ ] 1/2,4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32호

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홍 천 군 수

1.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 종류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사유
			기점	종점			포장 너비	도로 너비	
내촌면	농어촌 도로	205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932번지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868-2번지	835	-	5.5(m)	6.5(m)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노선지정

2. 사업기간: 2023. 3. ~ 2024. 12.
3. 사업시행자: 홍천군수
4. 자금계획: 2,000백만원
5. 열람기간: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홍천군 건설안전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7. 설계도서: 생략(홍천군 건설안전국 건설과 도로관리팀에 비치)
8. 편입토지조서: 별첨

내촌면 도관리 큰골선(내촌205호)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조서

◦ 내촌면 도관리 큰골선(내촌205호) 도로확포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246,204	11,055					
1	내촌면	도관리	932		구	157,737	1,371	국(건*부)				
2	내촌면	도관리	820-3	820-10	전	2,786	455	김*순 외 1인				
								손*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			1/2지분
								김*순	강원도 춘천시 춘주로 ***			1/2지분
3	내촌면	도관리	821	821-1	답	1,213	738	박*학 외 1인				
								박*극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1/2지분
								박*학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번길 **			1/2지분
4	내촌면	도관리	858-6	858-12	답	348	261	강*순	서울 송파구 송이로**길**	와*농*협*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근저당권
5	내촌면	도관리	859-5	859-9	전	1,185	187	류*우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큰골길			
				859-11			452					
6	내촌면	도관리	858-7	858-13	답	1,522	120	강*순	서울 송파구 송이로**길**	와*농*협*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근저당권
7	내촌면	도관리	858-8	858-14	답	421	89	강*순	서울 송파구 송이로**길**	와*농*협*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근저당권
8	내촌면	도관리	858-1	858-11	답	470	196	강*순	서울 송파구 송이로**길**	와*농*협*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근저당권
9	내촌면	도관리	858	858-10	대	495	10	강*순	서울 송파구 송이로**길**	와*농*협*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근저당권
10	내촌면	도관리	859-2	859-7	대	410	111	류*우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큰골길			
11	내촌면	도관리	859	859-6	대	728	9	유*희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큰골길			

12	내촌면	도관리	859-4	859-8	전	585	140	유*희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큰골길	한*전*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구분 지상권
13	내촌면	도관리	860	860-1	전	522	345	박*점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한*전*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구분 지상권
14	내촌면	도관리	868-1		도로	1,646	567	국(농*축*식*부)				
15	내촌면	도관리	산277-1	산277-6	임야	39,713	23	대*예*교*로*상*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동부길**번길 *	한*전*공*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구분 지상권
16	내촌면	도관리	863-9	863-14	전	4,676	113	이*섭 외 2인				
								이*섭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큰골길			1/3지분
								이*섭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1/3지분
								이*섭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번길 **-*			1/3지분
17	내촌면	도관리	864-1	864-4	전	5,253	1,429	박*점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864-6			57					
				864-8			408					
18	내촌면	도관리	863-3	863-10	전	3,740	6	박*점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863-11			699					
19	내촌면	도관리	863-4	863-12	답	393	16	박*점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20	내촌면	도관리	864-2	864-9	답	628	407	박*점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21	내촌면	도관리	863-5	863-13	답	1,795	57	박*점	전북 익산시 동서로**길 **-**			
22	내촌면	도관리	산288	산288-1	임야	10,512	82	원*변*남*령*파*촌*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23	내촌면	도관리	866	866-1	전	245	35	변*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24	내촌면	도관리	865	865-1	전	426	259	변*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25	내촌면	도관리	867	867-4	전	3,968	82	이*규 외 1인				

								이*규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			1/2지분
								이*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			1/2지분
26	내촌면	도관리	868	868-2	임야	4,787	2,331	국(재*부)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40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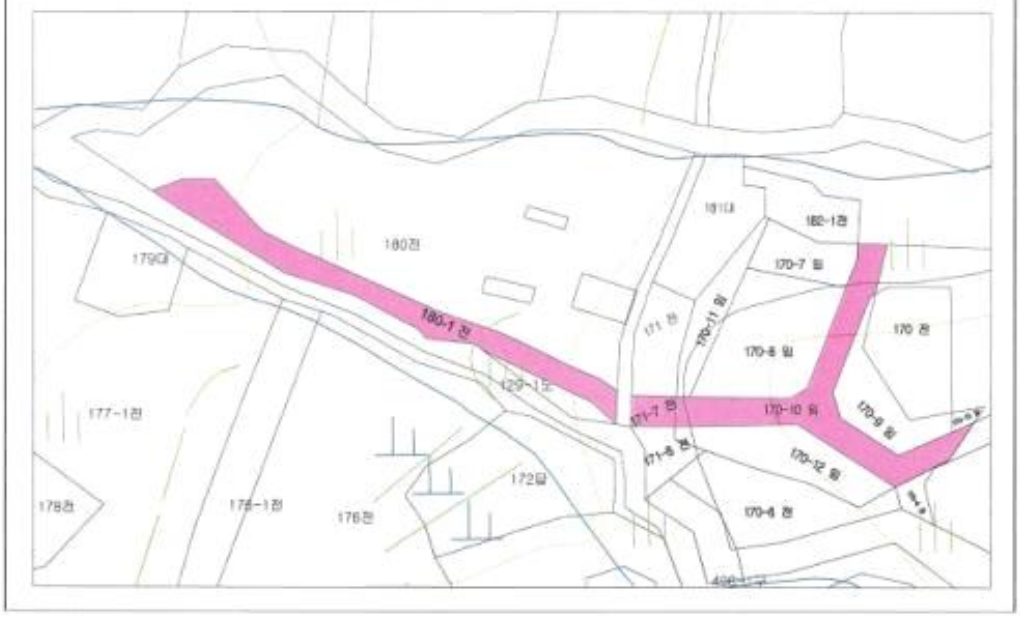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70-10번지외 2필지(171-7, 180-1번지)
3. 도로길이: 197.4m
4. 도로너비: 0.5~6.5m
5. 도로면적: 1,02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두촌면 자은리	170-10	임	518	518	박○환	도로 지정
	171-7	전	51	51	김○환	
	180-1	전	456	456	김○정	
계			1,025	1,025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4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377
3. 도로길이: 12m
4. 도로너비: 4.0m
5. 도로면적: 4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화촌면 구성포리	377	전	1,468	47	이○순	도로 지정
계			1,46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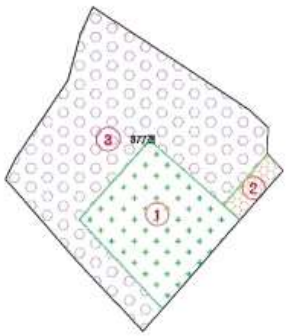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구 적 표

단독주택-0[illegible]순 (단위:㎡)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구 분	비 고
구성포	377	전	1,468	416	①	주 택 부 지
				47	②	진 입 로
합 계			1,468	463		

우량농지-0[illegible]순 (단위:㎡)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구 분	비 고
구성포	377	전	1,468	1,005	③	우 량 농 지
합 계			1,468	1,005		

현황도 | 축 척 <임 의>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4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공고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리 224-5
3. 도로길이 : 24.6m
4. 도로너비 : 6.0m
5. 도로면적 : 14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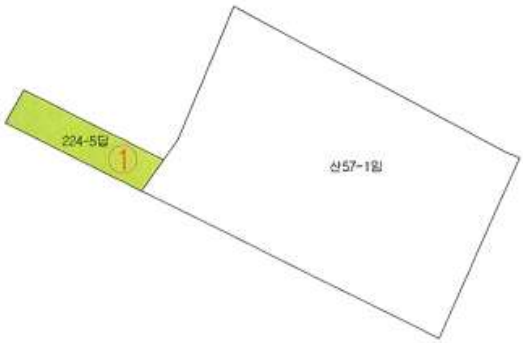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영귀미면 덕치리	224-5	전	147	147	농○회○ 법○ ㈜○울○	
합 계				**147**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 의〉



구 적 표

(단위 : ㎡)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청면적	비 고
덕치리	224-5	전	147	147	①
합 계				147	

현황도	축척 〈임 의〉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4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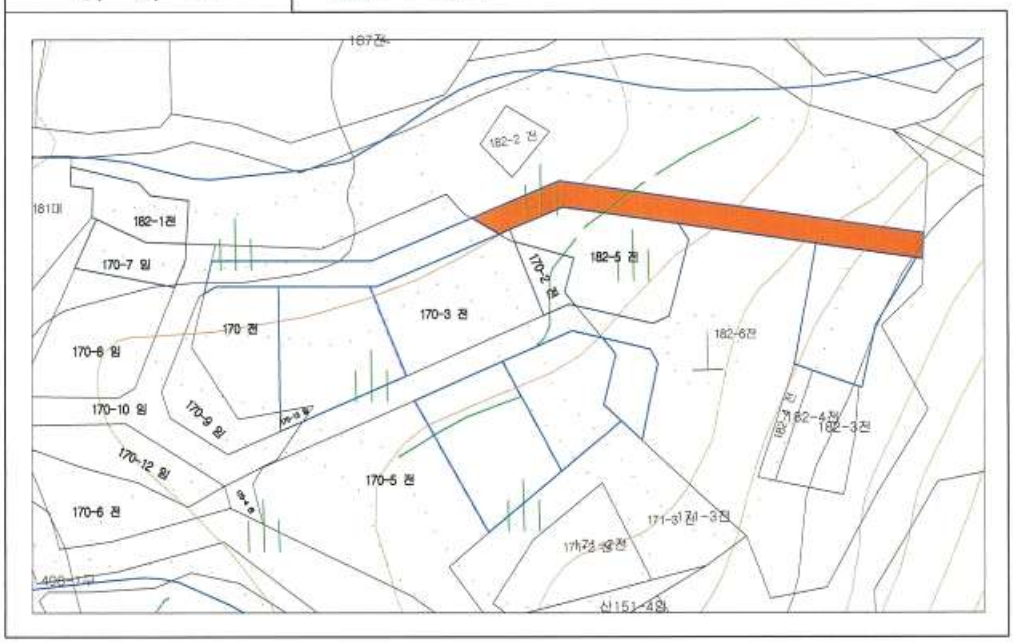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82-6번지
3. 도로길이: 87.3m
4. 도로너비: 5m
5. 도로면적: 43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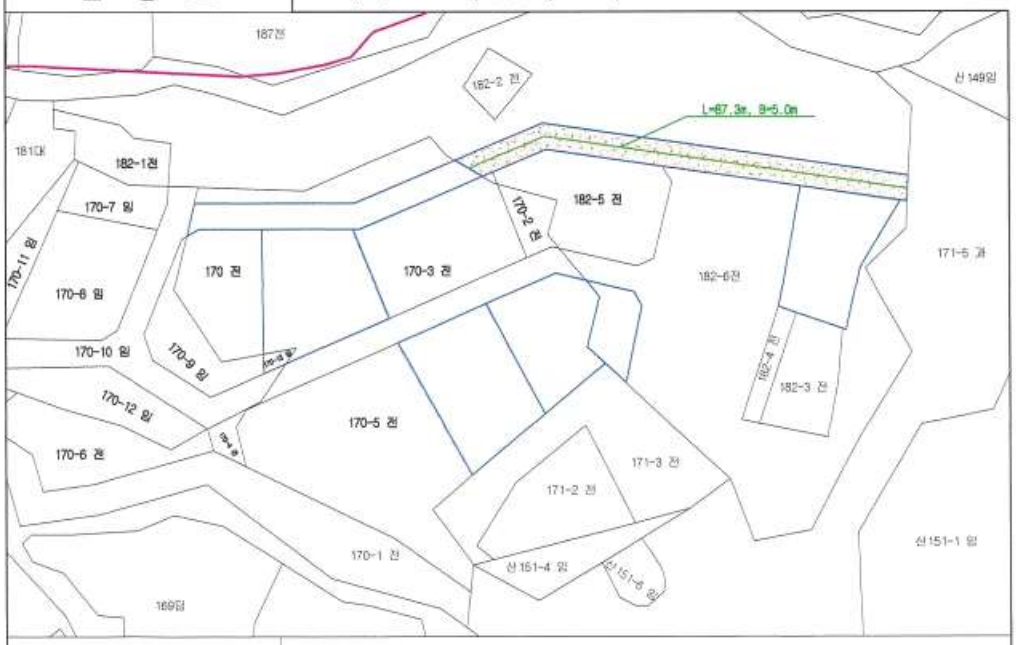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두촌면 자은리	182-6	전	6,038	437	박○환	도로 지정
계			6,038	437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49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8일

홍 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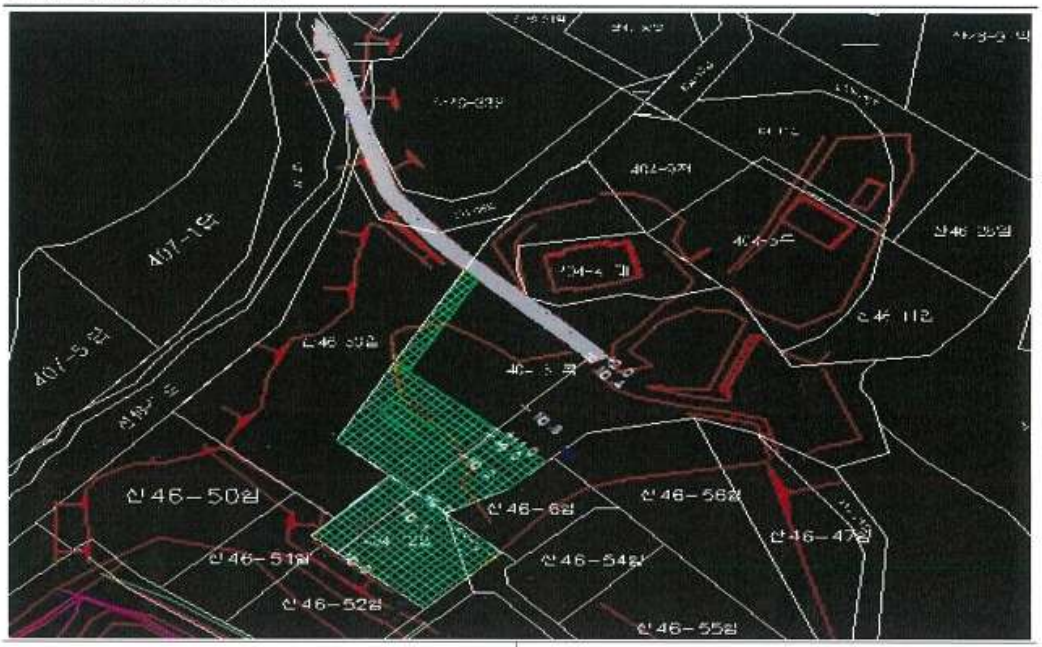
1. 사 업 명: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4-23
3. 도로길이: 31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126㎡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신대리	404-23	목	5,301	126	송○자	도로 지정
계			5,301	126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현황도 | 축 척 [ ] 1/600, [ ] 1/1,2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52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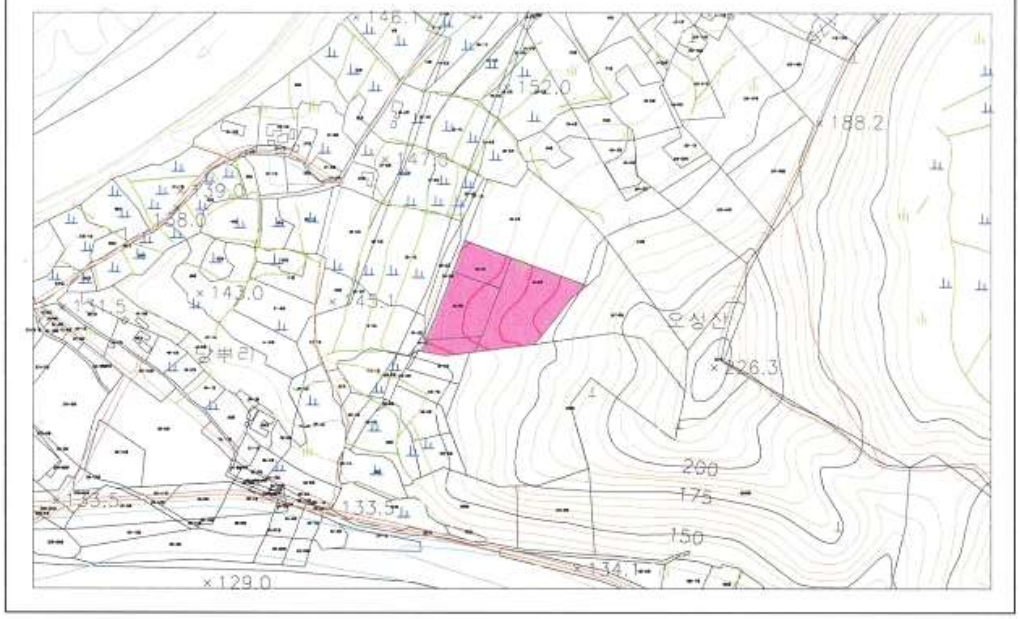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4-7번지
3. 도로길이: 43.9m
4. 도로너비: 8~12m
5. 도로면적: 50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홍천읍 검율리	24-7	전	503	503	조○준	
계			503	503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54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3. 도로길이: 30.0m
4. 도로너비: 4.0m
5. 도로면적: 12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북방면 소매곡리	201-5	전	155	37	장○형	도로 지정
	200	전	574	20	박○선, 장○형	
	200-7	전	204	66	서○덕, 장○숙	
계			933	123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600, [ ] 1/1,2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5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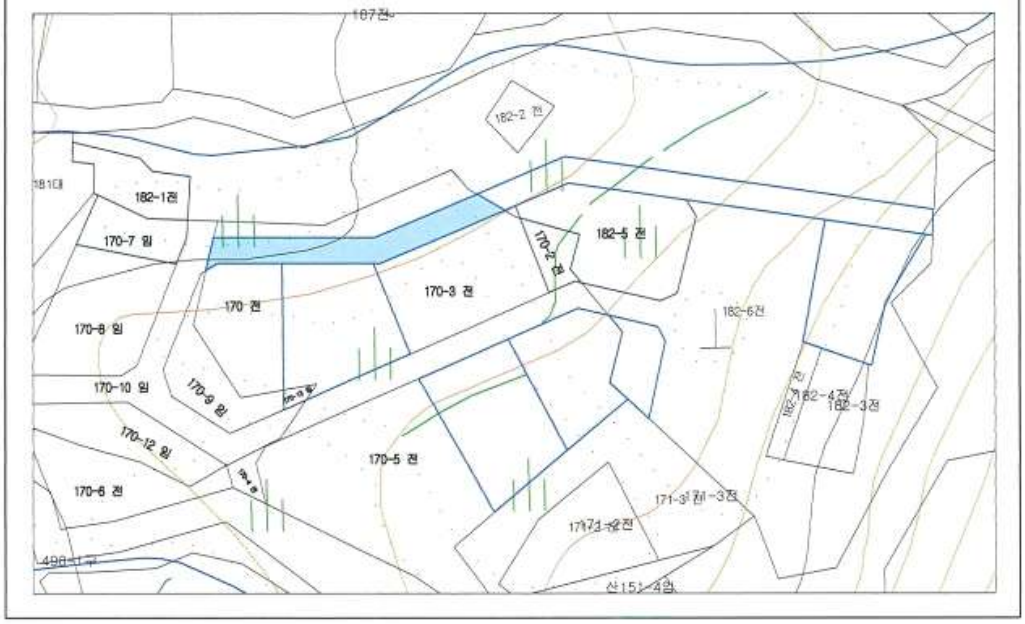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70-3번지
3. 도로길이: 55.8m
4. 도로너비: 5.0~6.5m
5. 도로면적: 28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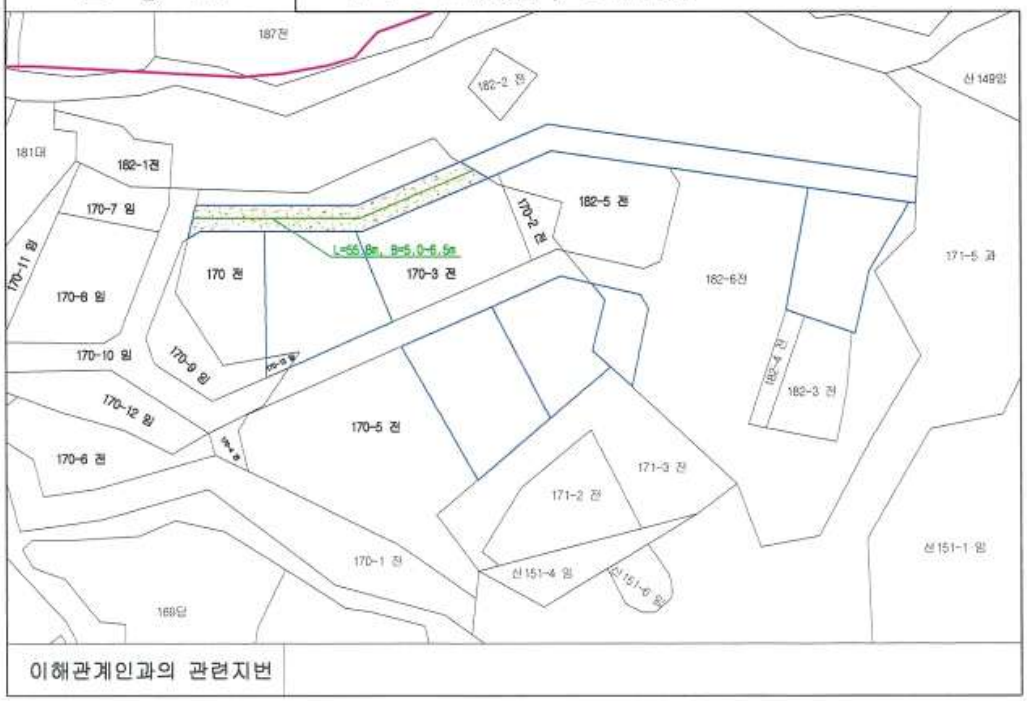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두촌면 자은리	170-3	전	1,527	281	박○환	도로 지정
계			1,527	281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59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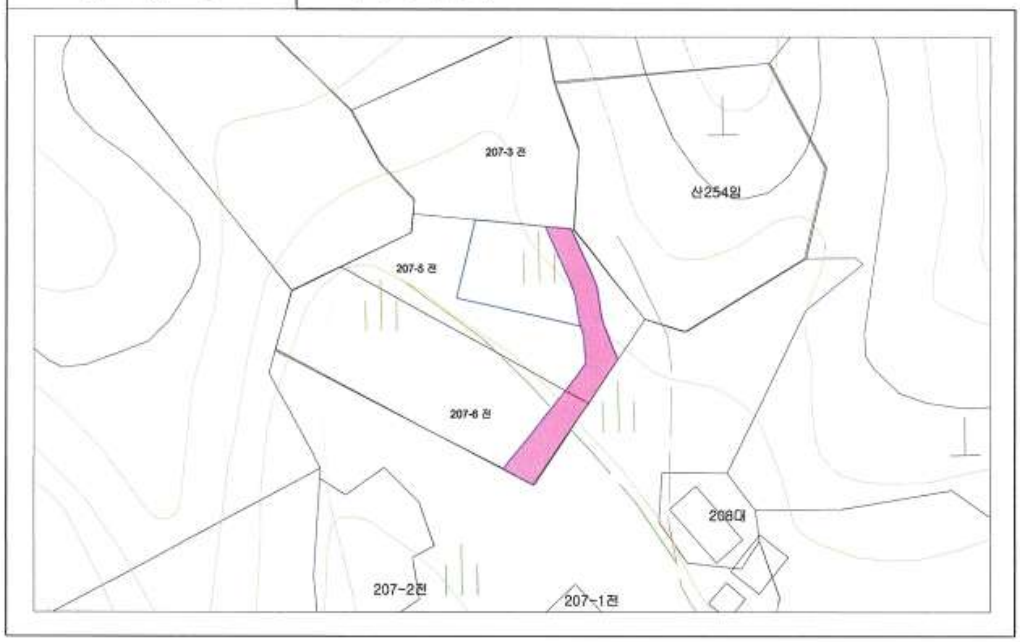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207-5, 207-6번지
3. 도로길이: 54.9m
4. 도로너비: 4.5~6.6m
5. 도로면적: 28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내촌면 도관리	207-5	전	1,134	169	전○선 이○복 김○선	도로 지정
	207-6	전	1,134	112		
계			2,268	281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60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060-2번지
3. 도로길이: 61m
4. 도로너비: 4.0~5.0m
5. 도로면적: 28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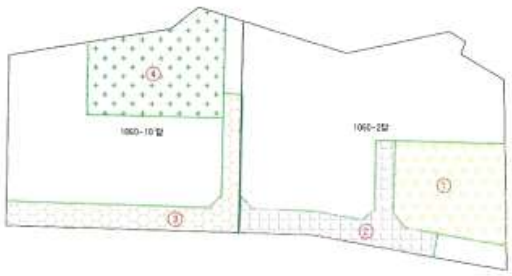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내촌면 물걸리	1060-2	답	2,310	282	강○원	도로 지정
계			2,310	282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구 적 표

신청지 (단위:㎡)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구 분	비 고
물 걸	1060-2	답	2,310	443	①	건축부지
				282	②	진입로
합 계			2,310	725		

신청지 (단위:㎡)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구 분	비 고
물 걸	1060-2	답	2,310	9	③	진입로
				330		
	1060-10	답	1,948	520	④	건축부지
합 계			4,258	859		

현황도 | 축 척 <임 의>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6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1060-2, 1060-10번지
3. 도로길이: 72m
4. 도로너비: 4.0~5.0m
5. 도로면적: 339㎡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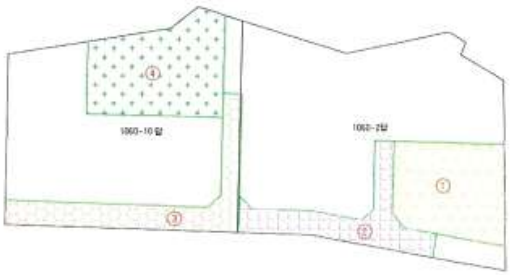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내촌면 물걸리	1060-2	답	2,310	9	강○원	도로 지정
	1060-10	답	1,948	330	강○원	
계			4,258	339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구 적 표

신청지 (단위:㎡)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구 분	비 고
물 걸	1060-2	답	2,310	443	①	건 축 부 지
				282	②	진 입 로
합 계			2,310	725		

신청지 (단위:㎡)

동리명	지 번	지 목	지 적	신 청 면 적	구 분	비 고
물 걸	1060-2	답	2,310	9	③	진 입 로
	1060-10	답	1,948	330		
				520	④	"건축부지"
합 계			4,258	859		

현황도 | 축 척 <임 의>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73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4-9
3. 도로길이: 26m
4. 도로너비: 4~5m
5. 도로면적: 11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신대리	404-9	전	677	112	송○자	도로 지정
계				112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현황도 | 축 척 [ ] 1/600, [ ] 1/1,2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75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7일

홍 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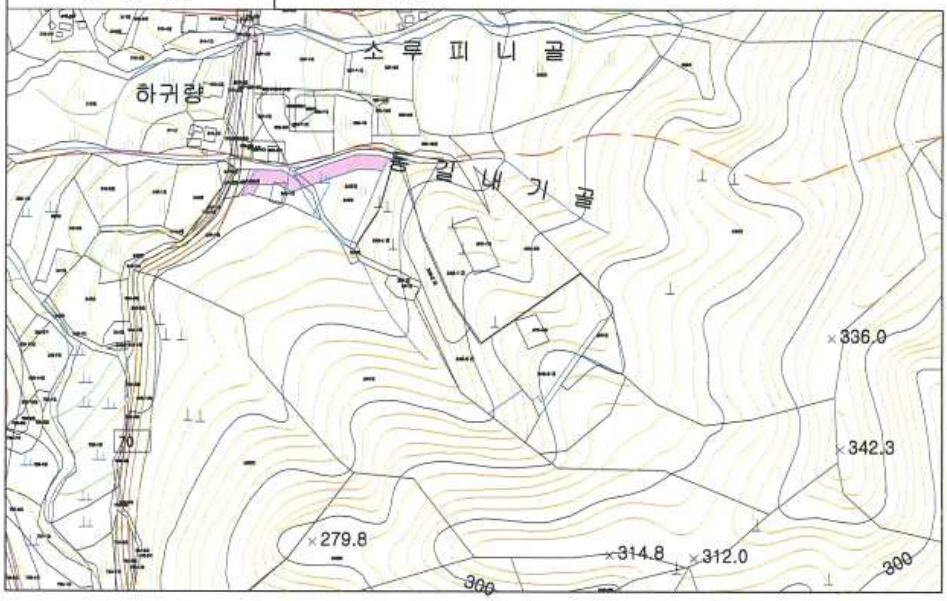
1. 사 업 명: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349, 348-1번지
3. 도로길이: 71m
4. 도로너비: 9.0 ~ 11.0m
5. 도로면적: 651㎡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대곡리	349	전	2,595	162	도○철	도로 지정
	348-1	대	918	489		
계			3,513	6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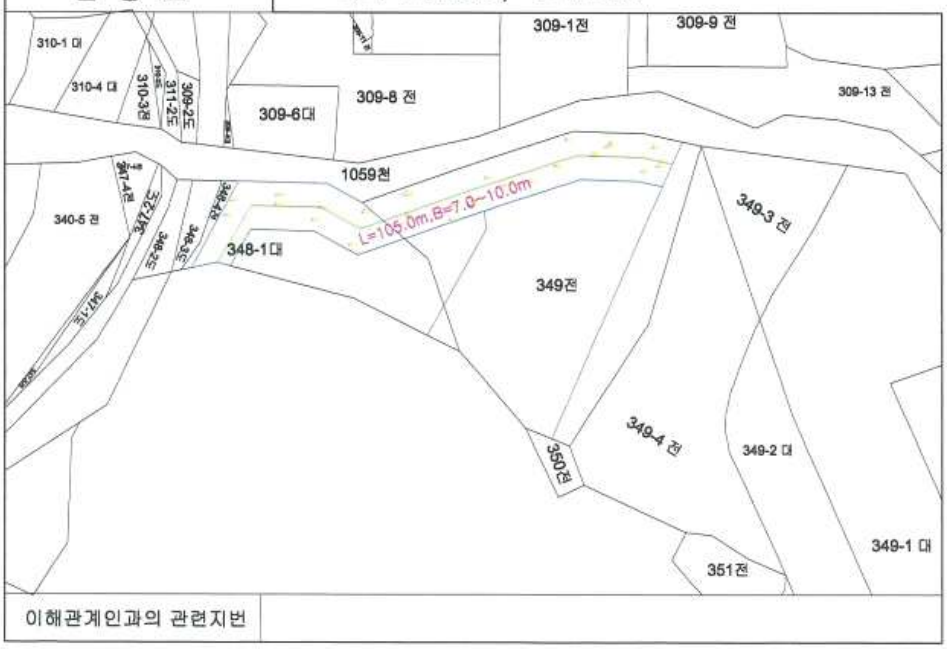
(2면중 제2면)

(당 초)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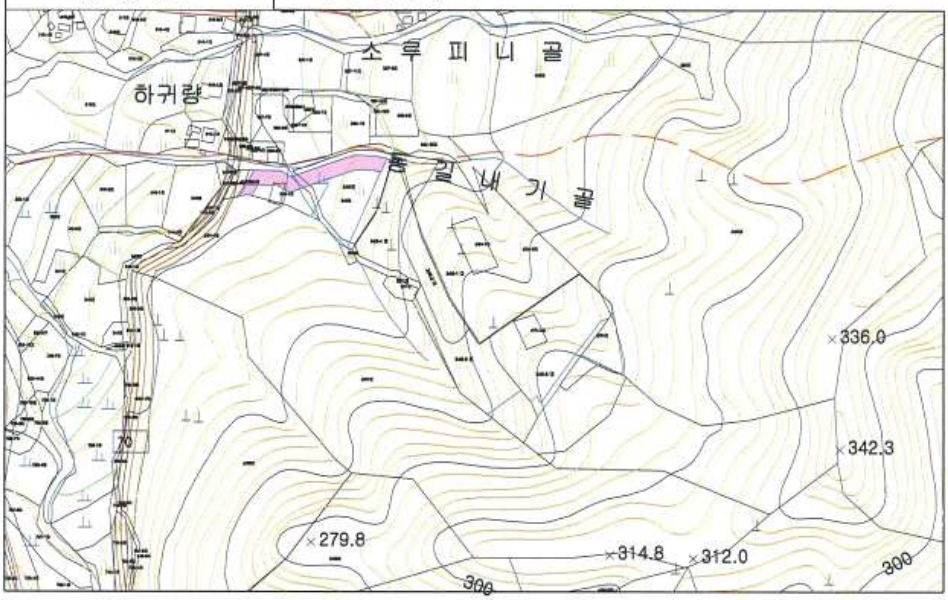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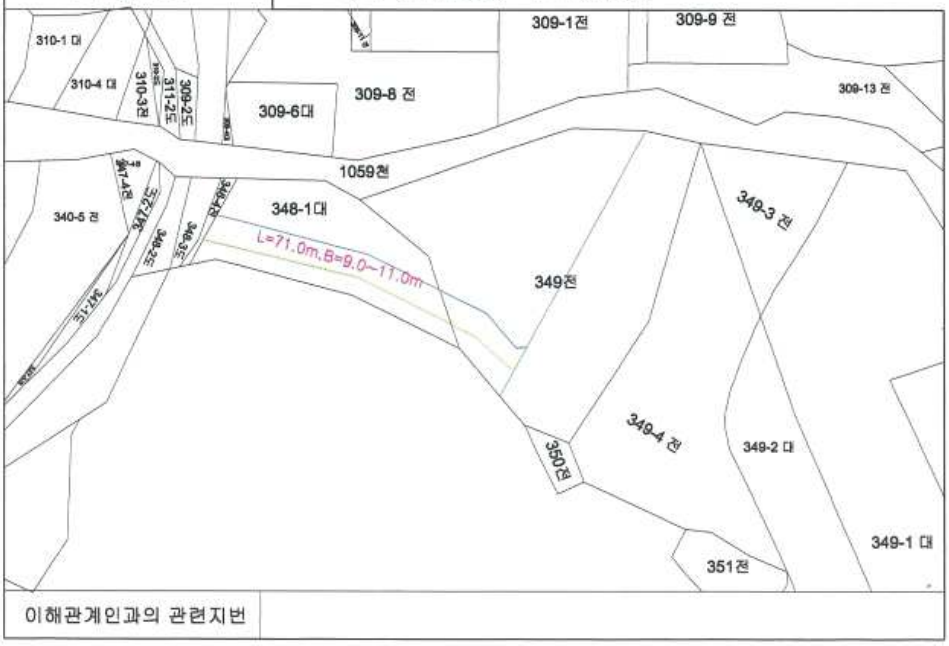
(2면중 제2면)

(변 경)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 1/1200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78호

무단방치 건설기계 소유자 미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홍천군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미상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건설기계 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자진회수 또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9일

홍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23. 3. 9. ~ 2023. 3. 24.(15일간)
2. 무단방치 장소: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79-3
3. 건설기계명: 굴착기
4. 건설기계 등록번호: 없음
5. 공고내용(유의사항)
   가. 소유자(점유자)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건설기계를 자진처리 또는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불이행시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기 또는 매각)됩니다.
   나. 건설기계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홍천군청 건설과 건설정책팀(☎033-430-2855)

사 진 대 장



○ 위치 :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479-3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84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3. 도로길이: 27m
4. 도로너비: 0.7~3.7m
5. 도로면적: 7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북방면 하화계리	469-14	전	1,650	72	김○재, 이○성	도로 지정
계			1,650	72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임 의>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8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홍 천 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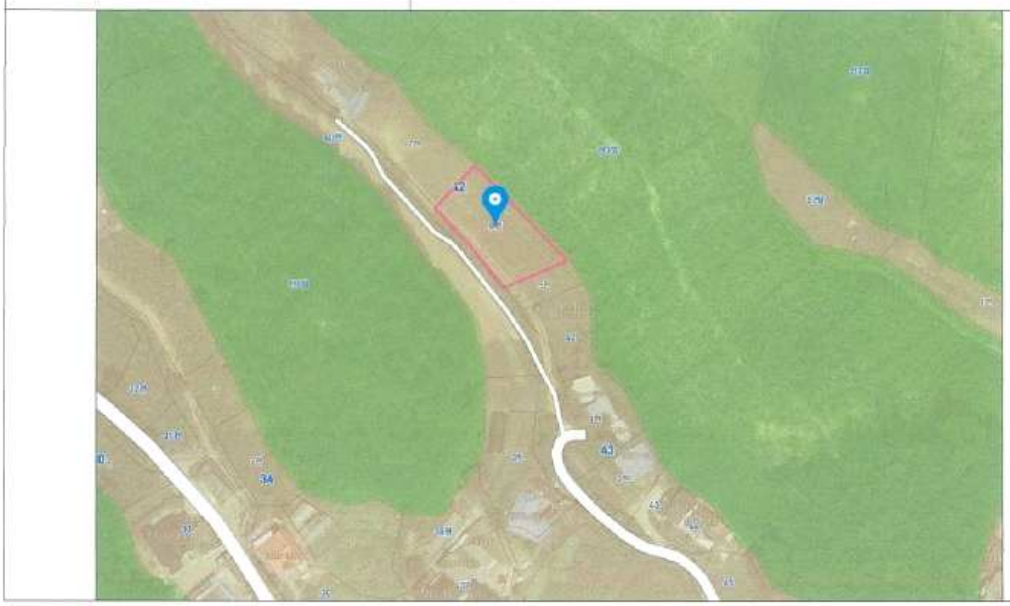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42-8, 42-5
3. 도로길이: 25m
4. 도로너비: 3.9~4m
5. 도로면적: 10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어유포리	42-8	전	660	66	여○익	도로 지정
	42-5	전	176	34	반○헌	
계			836	100		

(2면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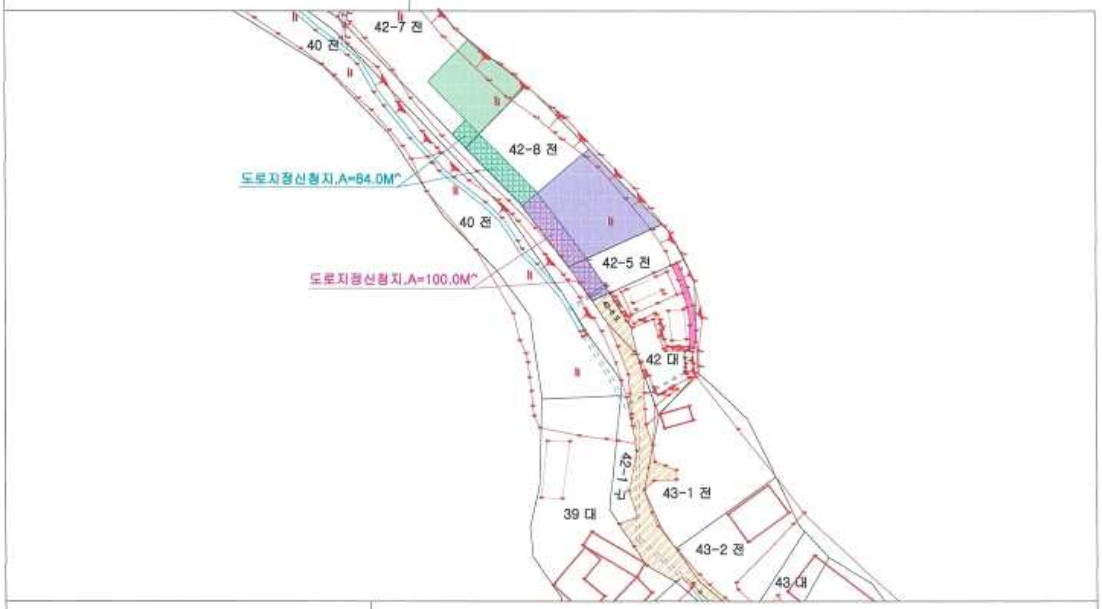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42-5 번지,42-8번지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8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42-7, 42-8
3. 도로길이: 21m
4. 도로너비: 3.9~4m
5. 도로면적: 8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어유포리	42-7	전	660	16	이○원	도로 지정
	42-8	전	660	68	여○익	
계			1,320	84		

(2면 중 제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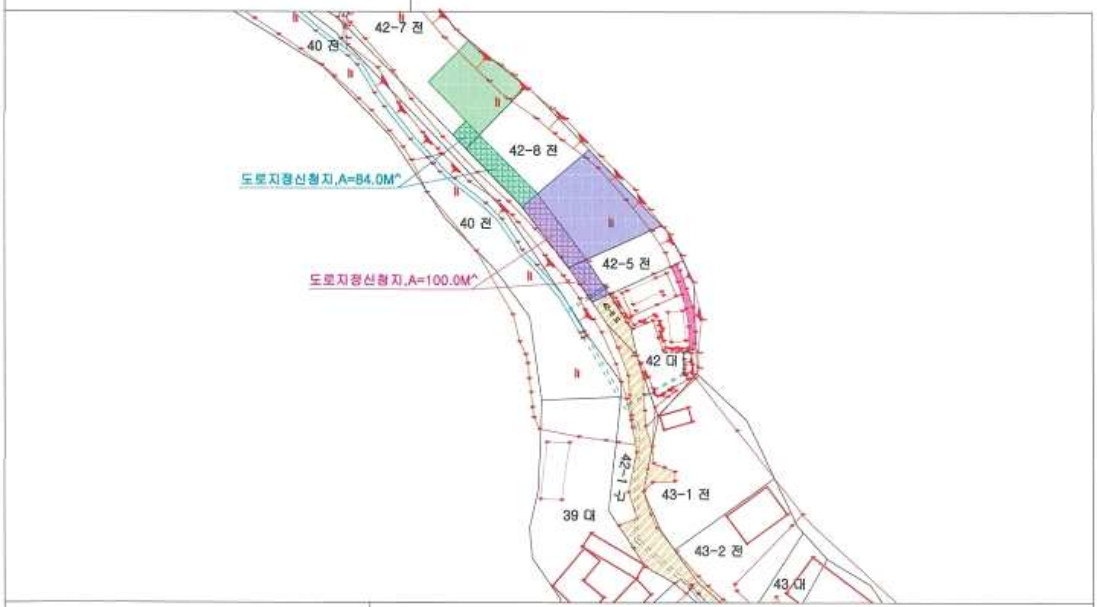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1/120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42-7 번지,42-8번지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89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854-1, 855번지
3. 도로길이: 93.4m
4. 도로너비: 4.2m ~ 6.3m
5. 도로면적: 44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팔봉리	854-1	전	2,030	371	박○정 이○림	도로 지정
	855	대	395	71		
계			2,425	442		

(당초, 변경)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91호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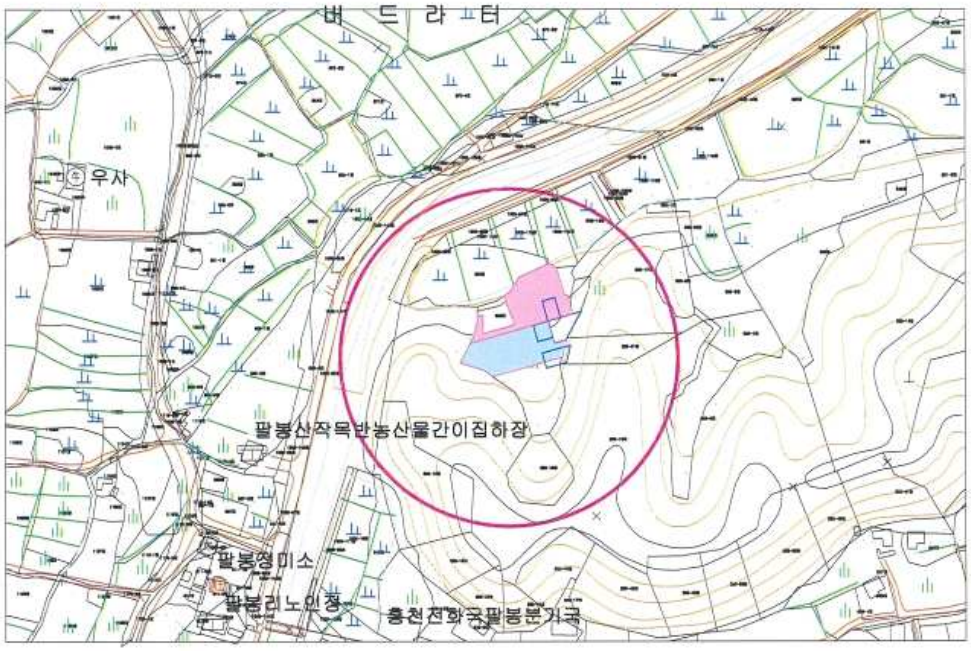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854번지
3. 도로길이: 92m
4. 도로너비: 4.2m ~ 6.8m
5. 도로면적: 41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팔봉리	854	전	3,364	412	박○정 이○림	도로 지정
계			3,364	412		

(당초, 변경)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497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변경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강(국가하천) 편입토지 조서를 변경 작성하고 그 내용 및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홍 천 군 수

1. 하 천 명 : 홍천강(국가하천)
2. 대상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71.7.19)로부터 법률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84.12.31)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62.1.1)로부터 법률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공고기간 : 2023. 3. 10. ~ 2023. 3. 27.(17일간)
4. 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보상청구권 소멸시효)
   ※ 소멸시효 기한내 보상 미청구시 보상청구권 행사 불가
5. 청구방법 : 구비서류 첨부하여 홍천군 하천 부서에 접수
6.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지적도, 대상자에 한함(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확정판결서), 상속 및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
7. 접 수 처 : 홍천군청 건설과(별관 4층)
8. 하천편입토지조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붙임 참조
   ※ 해당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홍천군청 건설과(☏033-430-2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편입토지조서 1부.
2. 하천편입토지보상 청구서(서식) 1부. 끝.

하천편입토지조서

일련번호	하천명(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편입당시	청구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국가하천					3,797,030.0	404,388.9			524 명		0 명			
	홍천군		199 필지		3,797,030.0	404,388.9			524 명		0 명			
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7-18	대	317.0	245.0	대	하천	박*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64-**				1/2
									강*도					1/2
2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7-31	대	21.0	21.0	대	제방	박*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54-**				
3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482-1	임야	268.0	268.0	임야	하천	황*식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남산마을길 **-1,				
4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70-2	제방	625.0	625.0	제방	제방	홍*준	서울특별시 성부구 장위동***-**				
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70-3	하천	833.0	819.0	하천	하천	홍*준	서울특별시 성부구 장위동***-**				
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72	하천	884.0	884.0	하천	하천	덕**식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미등기
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272-2	하천	2,019.0	2,019.0	하천	하천	덕**식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미등기
8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4-1	하천	813.0	813.0	하천	하천	대**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미등기
9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4-3	하천	69.0	69.0	하천	하천	대**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0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69-1	하천	2,142.0	2,142.0	하천	하천	대**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1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69-2	하천	585.0	585.0	하천	하천	대**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미등기
12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69-5	하천	1,316.0	1,316.0	하천	하천	대**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미등기
13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69-6	하천	1,002.0	1,002.0	하천	하천	대**장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미등기
14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24-23	하천	33.0	33.0	하천	하천	㈜미**택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1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495-2	도로	390.0	390.0	도로	하천	사*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검율리 ***				미등기
1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507-1	전	741.0	741.0	전	하천	강*봉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1/2
									장*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				1/2
1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528-2	하천	137.0	137.0	하천	하천	이*순	강원도 두촌면 자은리***				미등기
18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0	하천	1,412.0	1,208.0	하천	하천	황*관	강원도 두촌면 원동리**				미등기

1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3	임야	258.0	258.0	임야	하천	변*성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71-14	하천	185.0	185.0	하천	하천	승**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미등기
2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22	답	911.0	911.0	답	하천	김*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역내리***-*				
2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5	임야	552.0	552.0	하천	하천	김*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2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6	임야	562.0	562.0	하천	하천	김*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2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87	임야	453.0	453.0	하천	하천	김*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미등기
2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25	하천	788.0	788.0	답	하천	용*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미등기
2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42-6	제방	73.0	73.0	답	제방	김*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미등기
2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42-1	답	41.0	41.0	답	하천	김*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2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42-7	제방	25.0	25.0	답	제방	김*림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미등기
2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11	전	439.0	439.0	전	하천	최*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미등기
3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11-1	전	229.0	229.0	전	하천	최*흥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미등기
3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83	하천	52.0	52.0	하천	하천	유*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3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83-5	하천	21.0	15.0	하천	하천	유*선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미등기
3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262-5	하천	597.0	597.0	하천	하천	이*복	강원도 홍천군 동면 좌운리				미등기
3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262-2	하천	151.0	151.0	하천	하천	이*복	강원도 홍천군 동면 좌운리				미등기
3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202-12	제방	313.0	313.0	도로	제방	이*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미등기
3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265-1	답	17.0	17.0	답	하천	신*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3/11
									함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11
									신*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2/11
									신*천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2/11
									신*자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1/11
									신*호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2/11
3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262	잡종	53.0	53.0	잡종	하천	이*열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미등기
3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612-3	하천	705.0	705.0	하천	하천	이*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미등기

									이*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미등기
									이*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미등기
39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612-1	하천	614.0	614.0	하천	하천	이*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미등기
									이*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				미등기
									이*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미등기
40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15	하천	228.0	228.0	잡종	하천	박*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미등기
4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515-4	제방	19.0	19.0	전	하천	김*욱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 ***				미등기
42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36	하천	1,160.0	1,160.0	답	하천	박*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				미등기
43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82	하천	264.0	264.0	전	하천	이*안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미등기
44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158	하천	248.0	248.0	하천	하천	이*상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				미등기
4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349	하천	1,957.0	1,957.0	하천	하천	염*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미등기
4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8-1	전	1,484.0	1,484.0	전	하천	이*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4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8-5	전	403.0	403.0	하천	하천	(주)홍**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산**-*				
48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8-7	하천	776.0	776.0	전	하천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40
									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 길**				2/40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				10/40
									한*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 번길**				2/40
									박*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2/40
									최*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2/40
									인*란	충남 서산시 안견로 ***-**				8/40
									김*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 대**** *동 ***호				2/40
									염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1/40
									김*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번길**				1/40
49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0	전	3,749.0	3,717.0	전	하천	김*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5-10	임야	33,965.0	9,850.0	임야	하천	김*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26	전	1,940.0	1,940.0	전	하천	양*희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				

5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27	임야	6,826.0	6,826.0	임야	하천	차*우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밤벌길 ***				
5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28	전	12,397.0	12,397.0	전	하천	차*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				
5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18-1	임야	670.0	670.0	임야	하천	최*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길**				
5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18-2	임야	26,212.0	4,459.0	임야	하천	신*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길 **				2/5
									유*조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 **				2/5
									유*민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3 길 **				1/5
5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76	임야	6,065.0	1,117.0	임야	하천	유*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				
5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76-1	임야	6,992.0	1,241.0	임야	하천	이*순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				13604/20216
									양*정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				6612/20216
5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2	임야	15,134.0	3,463.0	임야	하천	서*********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5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4	임야	69,598.0	13,880.0	임야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6	임야	55,537.0	725.0	임야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	유지	1,254.0	1,254.0	유지	하천	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19
									함*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길**				2/19
									함*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함*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6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1	유지	476.0	476.0	유지	하천	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19
									함*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4 길**				2/19
									함*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함*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6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7	유지	1,798.0	1,798.0	유지	하천	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19
									함*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4 길**				2/19
									함*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함*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6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2	유지	2,238.0	2,238.0	유지	하천	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19
									함*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4 길**				2/19
									함*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함*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6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2-1	유지	17.0	17.0	유지	하천	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3/19
									함*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4 길**				2/19
									함*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함*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2/19
6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73	전	387.0	387.0	유지	하천	이*희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 번길 **				
6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13-11	임야	367.0	196.0	임야	하천	박*응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				2/4
									성*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2/4
68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14-17	임야	231.0	231.0	임야	하천	노*택	경기도 광명시 모세로 **				
69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8-1	임야	2,046.0	1,941.0	임야	하천	김*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1/2
									함*웅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				1/2
70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99-1	전	1,051.0	412.0	전	하천	김*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1/2
									함*웅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고성리 **				1/2
7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202-4	임야	2,269.0	250.0	임야	하천	김*권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				1/2
									주*****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 2 길 **				1/2
72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36	하천	1,160.0	800.0	전	하천	박*선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				미등기
73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82	하천	264.0	264.0	전	하천	이*안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미등기
74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544-2	하천	86.0	86.0	답	하천	나*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3/15
									서*영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2/15
									서*연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2/15
									서*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				2/15
									서*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2/15
									서*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2/15
									서*희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2/15
7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6	하천	2,278.0	2,278.0	답	하천	김*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미등기
7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11	임	23,424.0	1,425.0	임	하천	이*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				1/32
									홍*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				11/32
									이*훈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				10/32
									이*혁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22, 퇴계(4)주공아파트 *******				10/32
7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14	임	21,818.0	1,204.0	임	하천	이*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				

7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17	임	27,769.0	2,419.0	임	하천	이*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새둔지1길 **				1/2
									이*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277 번길 ****				1/2
7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18	임	67,438.0	6,813.0	임	하천	박*준	서울강남구수서동 *****				
8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67-4	임	136.0	61.0	임	하천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와동리 ***				1/2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8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67-7	임	699.0	298.0	임	하천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와동리 ***				미등기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미등기
8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69-6	천	1,863.0	1,863.0	천	하천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8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69-12	천	230.0	211.2	천	하천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8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송정리	69-13	천	442.0	442.0	천	하천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박*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				1/2
8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618-2	임	1,329.0	1,329.0	임	하천	박*보					미등기
8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803-6	제	36.0	36.0	제	하천	조*만	467				미등기
8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산29-9	임	6,640.0	305.0	임	하천	박*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2
									강*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2
8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산29-11	임	5,090.0	2,388.0	임	하천	박*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2
									강*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2
8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용수리	산29-12	임	6,792.0	165.0	임	하천	박*돈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2
									강*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1/2
9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8	임	34,314.0	2,357.0	임	하천	김*수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				19802/34314
									현*희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				14512/34314
9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10	임	39,669.0	1,518.0	임	하천	고*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				
9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47	임	18,118.0	802.0	임	하천	배*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2
									유*****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				1/2

9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48	임	36,000.0	5,456.0	임	하천	이*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				
9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49	임	36,397.0	5,252.0	임	하천	조*옥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				
9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158-1	임	138,843.0	13,176.0	임	하천	강*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				
9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159	임	82,666.0	14,086.0	임	하천	김*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				
9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3-66	임	3,728.0	1,930.0	임	하천	도*락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46 길**				
9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59-2	천	909.0	909.0	천	하천	신*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41 번길**				
9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59-3	천	164.0	164.0	천	하천	신*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41 번길**				
10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61-1	천	868.0	868.0	천	하천	신*인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41 번길**				
10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85	답	1,310.0	742.0	답	하천	이*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				
10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85-2	답	73.0	73.0	답	하천	이*희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				
10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88-2	도	403.0	393.0	도	하천	신*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 2 로 **				
10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88-14	전	408.0	302.0	전	하천	신*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10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303-5	천	117.0	117.0	천	하천	이*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 길***				
10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0	임	26,975.0	1,062.0	임	하천	정*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10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1	임	1,785.0	876.0	임	하천	이*선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0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2	임	77,950.0	10,216.0	임	하천	김*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1/6
									전*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호				1/6
									안*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6
									이*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호				1/6
									조*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				1/6
									권*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1/6
10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3	임	47,107.0	8,681.0	임	하천	김*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				1/4
									전*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동***호				1/4
									안*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4
									권*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4

11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4-1	임	6,446.0	1,559.0	임	하천	정*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11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50	임	109,696.0	1,349.0	임	하천	강*자	경기도성남시분당구매화로**				
11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1-4	임	514.0	368.0	임	하천	신*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1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15-4	임	2,994.0	2,505.0	임	하천	정*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1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103	임	88,457.0	10,038.0	임	하천	모*****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1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산115-1	임	95,207.0	235.0	임	하천	김*겸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76 번길**				
11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5	도	139.0	139.0	도	하천	강*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				3/19
									함*웅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2/19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				2/19
									함*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4 길**				2/19
									함*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				2/19
									함*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				2/19
11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76-2	임	6,612.0	1,432.0	임	하천	이*순	강원도 인제군 남면 동아실길**				13604/20216
									양*정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				6612/20216
11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76-3	임	6,612.0	3,328.0	임	하천	이*순	강원도 인제군 남면 동아실길 **				13604/20216
									양*정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				6612/20216
11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7	임	17,058.0	652.0	임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9	임	41,950.0	4,294.0	임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2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126-2	임	7,465.0	2,402.0	임	하천	김*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12-6	임	297.0	297.0	임	하천	박*양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2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4	천	965.0	938.7	천	하천	오*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12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	임	775.0	538.0	임	하천	정*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				1/2
									이*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				1/2

12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1	임	9,059.0	2,280.0	임	하천	정*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				1/2
									이*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				1/2
12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3	임	3,971.0	3,971.0	임	하천	정*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				1/2
									이*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				1/2
12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3	임	69,521.0	7,323.0	임	하천	우*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				
128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8	임	110,141.0	3,241.0	임	하천	황*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				
129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75-2	임	1,603.0	1,383.8	임	하천	정*경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 7 길 **				
130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76-2	임	361.0	97.0	임	하천	김*철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				
13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	381	천	1,747.0	1,017.0	천	하천	정*경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132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959	임	1,094.0	1,094.0	임	하천	이*동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도롱골길 147 번길*				
133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959-3	임	1,876.0	1,038.0	임	하천	김*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134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172	임	89,256.0	9,672.0	임	하천	김*억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				1/3
									오*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				1/3
									김*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				1/3
13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178	임	133,384.0	28,453.9	임	하천	해******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				
13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207	임	110,080.0	6,625.0	임	하천	이*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39669/110080
									정*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13 번길 ****				231406/11008000
									정*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6612/110080
									이*식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793/110080
									이*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				2644.47/110080
									송*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397/110080
									김*주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길 ****				397/110080
									김*주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길 ****				397/110080
									황*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 가 **				1322/110080
									김*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				988/110080
									이*동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				1653/110080
									윤*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661/110080

									최*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496/110080
									윤*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				496/110080
									지*곤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				661/110080
									문*열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				992/110080
									변*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661/110080
									이-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6 길**				39670/110080
									주********스	경기도 시흥시 군자로 504 번길 *				992/110080
									주*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3 번길****				5620/110080
									이*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				2644.47/110080
13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242	임	54,545.0	7,801.5	임	하천	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3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243-1	목	33,397.0	10,623.0	목	하천	이*현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2
									이*진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				1/2
13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243-2	임	5,016.0	942.0	임	하천	방*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5 가***				
14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243-3	임	16,529.0	7,751.0	임	하천	강*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4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211	천	2,238.0	2,077.0	천	하천	허*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4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산7	임	37,276.0	4,988.0	임	하천	허*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8 길**				
14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산7-2	임	3,567.0	3,507.0	임	하천	김*택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미등기
14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산8	임	294,437.0	7,883.0	임	하천	허*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8 길**				
14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349-1	도	50.0	50.0	도	하천	염*삼					미등기
14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10-2	임	4,101.0	4,101.0	임	하천	김*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2
									강*도					1/2
14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13	임	178,413.0	2,309.0	임	하천	㈜파***설	세종특별시 조치원읍 충현로 ***				86772/178666
									권*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21 길 **				992/178666
									윤*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로 114 번길***				992/178666
									신*철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				992/178666
									권*성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2 길 **				992/178666
									황*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 번길****				992/178666

									허*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				992/178666
									임*재	서울시 송파구 삼정로 4 길***				992/178666
									오*수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				992/178666
									김*희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				992/178666
									박*철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 2 길**				992/178666
									구*임	서울시 중구 청구로 17 길*				1653/178666
									황*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992/178666
									유*승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				992/178666
									신*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				992/178666
									이*순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				992/178666
									조*희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 1 길***				992/178666
									안*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 2 로 ***				992/178666
									김*현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 3 가길 **				661/178666
									임*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33 번길 ***				992/178666
									서*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하령 2 길***				992/178666
									전*정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31 길 ****				992/178666
									선*수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992/178666
									김*진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 번길 **				992/178666
									김*선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29 가길 ****				992/178666
									이*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96 번길 **				1068/178666
									함*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				1002/178666
									이*순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두릉골길 **				992/178666
									고*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6 가길 **				992/178666
									백*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306 번길 ***				1002/178666
									임*연	경기도 의왕시 갈미로**				721/178666
									이*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217 번길 **				1002/178666
									오*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326 번길 ***				721/178666
									장*훈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992/178666
									송*호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토 54 길 **				992/178666

									김*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52번길***				1068/178666
									신*숙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				992/178666
									이*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96번길 **				992/178666
									최*	서울시 관악구 인헌 12 길 ***				992/178666
									이*리	경기도 군포시 대야 2 로 143번길**				992/178666
									임*희	서울시 성동구 행당로 **				992/178666
									배*경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992/178666
									김*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5 길 **				1002/178666
									김*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				661/178666
									이*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407번길 **				661/178666
									오*성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구두미1 길 **				661/178666
									이*숙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13 나길**				899/178666
									장*자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 번길 **				3306/178666
									이*득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08 길 **				3306/178666
									김*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101 번길 **				1653/178666
									권*성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2 길 **				3306/178666
									김*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				3306/178666
									권*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21 길 **				1653/178666
									조*임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 2 길 ***				3306/178666
									봉*필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01 번길**				3306/178666
									윤*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306/178666
									구*임	서울시 중구 청구로 17 길*				992/178666
									김*민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46 길**				3306/178666
									김*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부창 6 길**				3306/178666
									손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용소길***				3306/178666
									신*욱	인천시 서구 청라라임로 ***				6612/178666
									홍*순	강원도 춘천시 지석로**				125/178666
									유*혁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길***				899/178666
									김*자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				661/178666
									서*석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88 길 *****				721/178666

									임*연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8 길 ***				992/178666
14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43	임	7,240.0	449.0	임	하천	남*곤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항재로 공근2길**				
									남*로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봉화마을2길 *****				
14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44	임	113,355.0	1,856.0	임	하천	염*식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1/4
									염*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				1/4
									염*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				1/4
									염*식	강원도 홍천군 동면 개운리**				1/4
15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50	임	160,165.0	3,288.0	임	하천	권*복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				
15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51	임	81,027.0	8,442.0	임	하천	권*헌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5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	전	3,825.0	1,471.0	전	하천	손*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				1333.87/25127
									이*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505.79/25127
									박*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1199.7/25127
									강*구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				530.58/25127
									최*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 가***				1229.7/25127
									황*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125.58/25127
									석*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487.35/25127
									장*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314.90/25127
									배*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88/25127
									김*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452.765/25127
									김*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4.95/25127
									이*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24.96/25127
									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				1320.52/25127
									이*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502.49/25127
									백*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52.62/25127
									차*화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산***				530.58/25127
									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25.58/25127
									한*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림동*****				674.82/25127
									장*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14.90/25127
									장*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				314.89/25127

									하*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1280.995/25127
									송*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				1183.47/25127
									김*각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				110.19/25127
									심*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7 나길**				383.22/25127
									엄*훈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19 번길***				399.88/25127
									이*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3 길 ***				39.7166/25127
									유*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3 길 ***				26.4778/25127
									양*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01 번길***				595.04/25127
									백*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				643.25/25127
									윤*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713.46/25127
									손*수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				1421.76/25127
									백*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번지,				3001.67/25127
									이*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5.09/25127
									유*균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				26,4778/25127
									유*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3 길 ***				26.4778/25127
									신*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01 번길 ***				595.04/25127
									권*남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				214.91/25127
									고*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3 동****				826.45/25127
									이*세	서울시 중구 신당동 ***				662/25127
15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1	도	430.0	51.0	도	하천	정*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2
									정*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				1/2
15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9	전	16,889.0	442.0	전	하천	손*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				1333.87/25127
									이*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505.79/25127
									박*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1199.7/25127
									강*구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				530.58/25127
									최*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 가 ***				1229.7/25127
									황*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				125.58/25127
									석*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487.35/25127
									장*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				314.90/25127

									배*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74.88/25127
									김*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				1452.765/25127
									김*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4.95/25127
									이*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24.96/25127
									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320.52/25127
									이*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				502.49/25127
									백*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52.62/25127
									차*화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산***				530.58/25127
									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25.58/25127
									한*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산림****				674.82/25127
									장*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				314.90/25127
									장*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314.89/25127
									하*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1280.995/25127
									송*숙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1183.47/25127
									김*각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0.19/25127
									심*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7 나길 **				383.22/25127
									엄*훈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 19 번길 ***				399.88/25127
									이*옥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3 길***				39.7166/25127
									유*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3 길 ***				26.4778/25127
									양*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01 번길 ***				595.04/25127
									백*학	경기도 용인ㅇ시 기흥구 구갈동 ***				643.25/25127
									윤*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				1713.46/25127
									손*수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				4284/25127
									백*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번지				3001.67/25127
									이*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35.09/25127
									유*균	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 ***				26.4778/25127
									유*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123 길 ***				26.4778/25127
									신*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01 번길 ***				595.04/25127
									권*남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214.91/25127
									고*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 3 동 ****				826.45/25127

									이*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62/25127
15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0	전	1,695.0	1,664.0	전	하천	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1 길**				2/40
									한*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40
									박*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40
									최*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				2/40
									인*란	충남 서산시 안견로 *****				8/40
									김*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				2/40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				10/40
									권*옥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0/40
									염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1/40
									김*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 번길 **				1/40
15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41-3	제	199.0	199.0	제	하천	이*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3/17
									이*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 동**				2/17
									이*훈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2/17
									윤*성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안길 **				2/17
									이*기	미합중국 뉴저지주 비겐군 글렉록시헤롤드가 *				2/17
									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 가 **				2/17
15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41-4	제	40.0	40.0	제	하천	이*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3/17
									이*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 동 **				2/17
									이*훈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2/17
									윤*성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안길**				2/17
									이*기	미합중국 뉴저지주 비겐군 글렉록시헤롤드가*				2/17
									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 가 **				2/17
15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18	천	235.0	235.0	천	하천	이*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3/17

									이*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6동**				2/17
									이*훈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2/17
									윤*성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안길 **				2/17
									이*기	미합중국 뉴저지주 비겐군 글렉록시헤롤드가 *				2/17
									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17
159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18-1	천	218.0	218.0	천	하천	이*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3/17
									이*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2/17
									이*원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6동**				2/17
									이*훈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2/17
									윤*성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안길**				2/17
									이*기	미합중국 뉴저지주 비겐군 글렉록시헤롤드가 *				2/17
									이*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17
160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35	천	175.0	175.0	천	하천	박*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161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2-10	임	3,351.0	3,311.0	임	하천	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62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14	임	8,331.0	1,330.0	임	하천	주*******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30 길**				
163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15	임	5,554.0	1,340.0	임	하천	주*******셋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 30 길 **				
164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17	임	552,471.0	1,887.0	임	하천	이*상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덕치길 *				51/100
									농업회사법인*** ******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설악로*****				47.2049/100
									이*복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정 10 길***				1.7951/100
165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0	임	34,492.0	8,170.0	임	하천	주******힐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온천길**				
166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0-2	임	67,214.0	12,344.0	임	하천	주******힐외1인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온천길**				
167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7-2	임	24,720.0	527.0	임	하천	주******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				
168	홍천강(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8	임	37,686.0	299.0	임	하천	남*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6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6-14	천	650.0	376.0	천	하천	임*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17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6-31	천	90.0	6.0	천	하천	임*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				
17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573-6	전	571.0	331.0	전	하천	이*훈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				
17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578-3	답	725.0	725.0	답	하천	하*******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7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20	답	2,099.0	2,084.0	답	하천	이*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				
17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5-6	임	7,594.0	6,458.0	임	하천	신*철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미등기 1/2
									조*호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				미등기 1/2
17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1	전	1,289.0	1,272.8	전	하천	김*인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				
17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97-1	전	328.0	328.0	전	하천	밀**달	428				미등기
17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98-2	전	56.0	56.0	전	하천	광**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연공정**				미등기
17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13-2	답	54.0	54.0	답	하천	고*호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				미등기
17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534-4	답	813.0	813.0	답	하천	임*복	강원도 두촌면 철정리***				
18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548-2	답	7.0	7.0	답	하천	홍*혁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8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39-2	도	53.0	53.0	도	하천	임*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				
18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23-1	임	78,966.0	236.0	임	하천	전*현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1/2
									전*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1/2
18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산105-5	임	9,256.0	4,022.0	임	하천	강*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				
18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29	천	23.0	23.0	천	하천	지*랑					미등기
18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96	답	2,957.0	417.0	답	하천	이*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				
18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185-4	답	220.0	220.0	답	하천	용*식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				
18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363-2	답	6.0	6.0	답	하천	이*호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				
18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2	대	188.0	100.0	대	하천	오*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6길**				
18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3	대	387.0	211.0	대	하천	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3길**				
190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4-2	답	1,587.0	160.0	답	하천	김*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장터길***				28/133

									임*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				42/133
									임*성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				28/133
									임*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				7/133
									임*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133
									임*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				8/133
									조*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길 ***				12/133
191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4-4	답	466.0	42.0	답	하천	오*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6길 **				
192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4-5	전	424.0	179.0	전	하천	김*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3길 **				
193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647	답	1,081.0	512.0	답	하천	고*식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94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0-2	천	1,226.0	1,226.0	천	하천	김*범	932				미등기
195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3-8	답	42.0	42.0	답	하천	이*홍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치리***				
196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3-13	답	14.0	14.0	답	하천	이*홍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치리***				
197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87	답	134.0	134.0	답	하천	함*기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98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산93-1	임	25,587.0	225.0	임	하천	황*호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199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63	답	274.0	274.0	답	하천	김*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절차

보상청구절차

매년 3월 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

편입토지조서작성

하천별 작성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상절차 문서로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보 상 청 구

토지소유자등: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시장에게 제출 → 접수증 교부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보상대상자결정

보상청구서 접수(필요시 청구인등의 의견청취) → 보상대상자 결정 → 보상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보상계획수립

보상대상자 확정에 따른 보상계획 수립 → 예산 편성

보상금액의 산정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평가의뢰 → 보상액 산정

보 상 금 지 급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보 → 보상금 지급

※ 국가하천 하천편입토지 보상재원은 전액국고로 예산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권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조서
□ 보상청구 에 대한 의견서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 견 서 제 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구비서류등	의견서 제출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견서 제출인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 1. 5.>

접수번호 :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번호:)		
토지의 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 면적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지적공부상 지목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3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접 수 인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부서류	1.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인감증명서 3. 상속인 또는 승계인의 경우 상속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지적도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접 수 증

접 수 번 호:
토지의표시:
청 구 인:

2023년 월 일

접 수 자 인

홍천군수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보상절차**

편입토지조서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 하천별 작성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상절차 문서로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 시·도지사에게 송부

시·도지사 : 하천별로 취합 작성·공고 → 보상청구절차 등 통지

보 상 청 구

토지소유자등 :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접수증 교부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 시·도지사에게 송부(의견서 첨부)

보상대상자결정

시·도지사 : 보상청구서 접수(필요시 청구인등의 의견청취) → 보상대상자 결정 → 보상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보상 계획 수립

시·도지사 :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하천별 보상계획 수립 →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부장관은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

보상금액의 산정

시·도지사 :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 보상액 산정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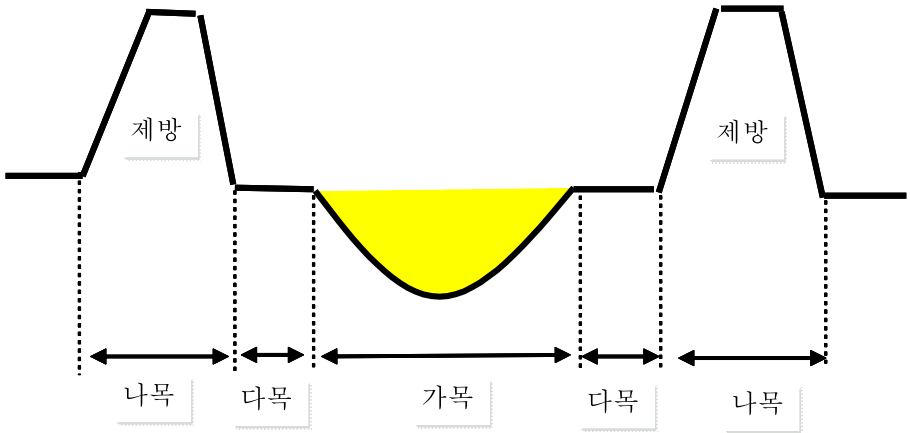
보 상 금 지 급

시·도지사 :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보 → 보상금 지급

□ **보상대상**

가. 하천의 구분

- 가목 :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포락지)
- 나목 : 하천부속물(제방등) 부지
- 다목 :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나. 보상대상(법 제2조)

1) 다음 경우중「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 **보상순위**

가.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일시보상은 어려울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보상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되 보상순위는 매년 영 제5조에 따른 보상계획 확정 이전에 보상청구된 보상청구자를 대상으로 정함

(1) 시.도지사는 해당연도 보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1급하천)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단, (가) 및 (다)의 경우에는 국유로 등기된 일자순위에 의함

(가)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된 토지

(나)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다)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된 토지

(라)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2) (1)의 규정에 의한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일자순서에 의하고, 보상청구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편입토지의 필지당 면적이 작은 것부터 보상금을 지급함

※ 이 경우 보상청구서를 구비서류 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완 할 때에는 당초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순위를 결정함

(3) (1)의 (가) 및 (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의 총액이 해당연도 보상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상예산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의 (가) 및 (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의 (다) 및 (라)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이 경우 (1)의 (다) 및 (라)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 중 그 보상금액이 해당연도 보상 예산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액은 다음연도에 분할하여 보상할 수 있음

(4) 해당년도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음연도에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보상예산으로 (1) 부터 (3) 까지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연도의 보상대상자에 우선함

나. 영 시행 이후 분할된 토지는 보상순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다. 시.도지사는 보상순위 및 보상예산 등을 고려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 보상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 보상금액 산정

가. 시·도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및 평가조건 등을 기재한 평가의뢰서에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나.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의뢰 시 이를 평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1) 이는 국가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인위적 행위 직전의 상태대로 평가되도록 평가조건을 명시하여 평가의뢰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2) 가령, 한강종합개발사업 등 인위적인 국가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 가능한 고수부지가 포락지로 변하여 현재의 이용상황이 현저히 불리해졌음에도 그것을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면 민원이 될 것이며, 반대로 포락지가 인위적인 국가사업 등으로 성토되어 현재의 이용 상황이 현저히 유리해졌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평가한다면 보상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이익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때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은 하천관리청이 판단하거나 재판 판결문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 보상평가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순위에 따라 해당연도 보상금지급대상 토지에 대하여 실시함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50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리 58-1
3. 도로길이: 27m
4. 도로너비: 4m
5. 도로면적: 108㎡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길곡리	58-1	전	108	108	김○덕	도로 지정
계			10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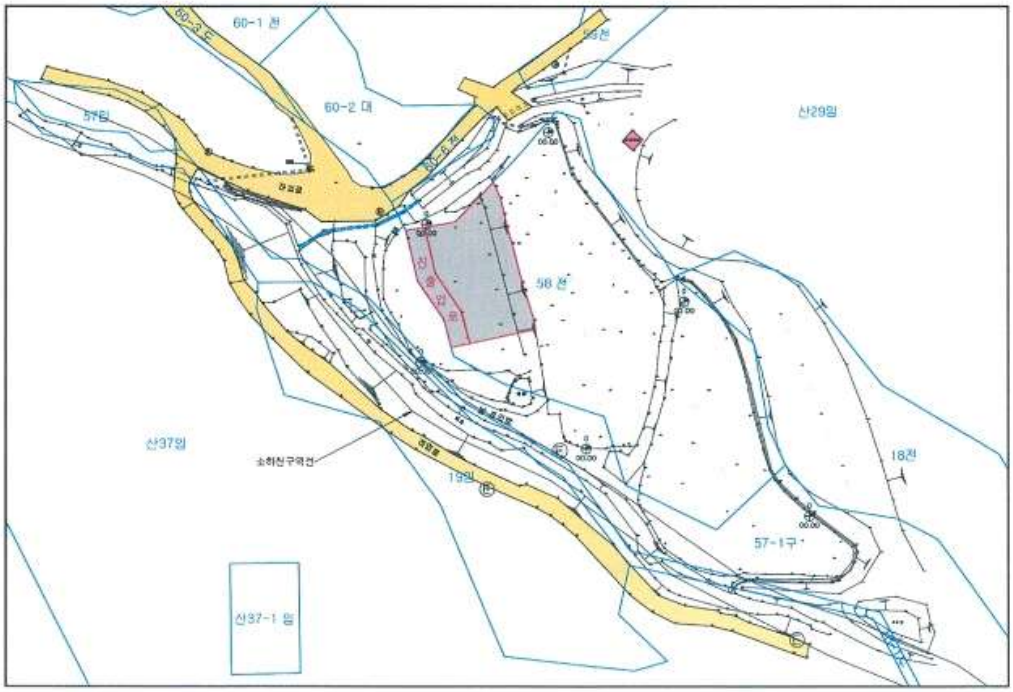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현황도 | 축 척 [ ] 1 / 600, [√] 1 / 1,200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3-509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도로의 폐지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2-607호로 지정·공고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도로의 폐지
2. 도로위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 165번지 외 2필지
3. 도로길이: 377.4m
4. 도로너비: 6.0m
5. 도로면적: 1,999㎡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북방면 북방리	165	답	2,331	434	최○규	도로 폐지
	175	목	12,466	1,285	이○순	
	178		2,364	280	신○하	
계			17,161	1,999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 축 척 <임 의>



현황도 | 축 척 [ ] 1 / 600, [ ] 1 / 1,200